

2023년 기준 광업·제조업조사 조사원 채용 합격자 공고

2023년 기준 광업·제조업조사 조사원 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7일

완 산 구 청 장

1 합격자 명단

채용구분	인 원	접수번호	성 명
조사원	1명	01	최○○

2 채용서류의 반환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(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)이내에 서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방법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1] 제출 ※합격자는 해당사항 없음
 - 제출서류를 직접 반환 또는 일반우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음 (단 특수우편물의 경우 응시자 부담)

3 기타사항

- 이의신청기간 운영
 - 신청기간 : 2024. 6. 7. ~ 12. 30.
 - 신청대상 :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니면서, 본인이 제기한 사항에 한해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답변

<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>

-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-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, 정보 요구 등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- 신청방법 : 이의신청서[붙임2] 작성 후 지원자 본인 서명한 스캔본을
담당자 이메일(hyerim121212@korea.kr)로 제출

○ 문의처 :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통계 담당자(063-220-5212)

[붙임 1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응시분야, 응시번호
주 소		
연 락 처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방문 반환의 경우 미작성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전주시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 2]

이 의 제 기 신 청 서			
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연락처		이메일	
이의신청 내용	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기재		
년 월 일			
신청인 (서명)			